

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5일	
[] 대기 [] 수질 [] 소음·진동 [] 실내공기질 [] 악취					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	
	상호(사업장 명칭)		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변경신청 내용	변경내용				
	변경사유				
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2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.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(소음·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			수수료 분야별 5,000원					
처 리 절 차					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 수 (민원실)	→	검 토	→	결 재	→	등록증 발급	처리기관: 시·도 또는 대도시(측정대행업 담당부서)